

개설 주체별 세금 구조와 면세·과세 확인 항목

회계법인 리파인드

병·의원 세무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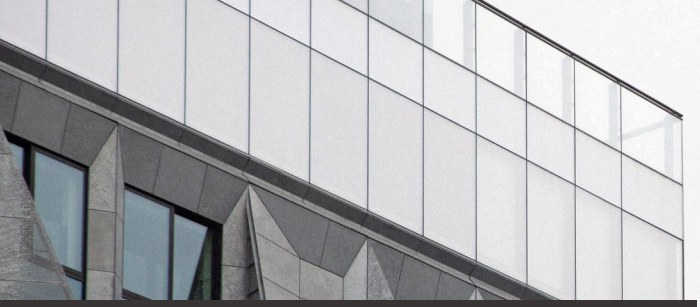

01

서비스 개요

일반 주식회사는 의원을 개설할 수 없어 전환 방식이 한정됩니다

검토 결론

의원은 의사·의료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의료법 §33②, §87).

의료업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대상이고,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08⑤, §133①3호).

세무 쟁점 4개

1
개설 주체
의료법 §33②1~5호에 해당하는 자만 개설

2
과세·면세
요양급여 비대상 미용 항목은 과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3
장부·신고
복식부기 의무,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4
인건비 소득
봉직의 급여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이런 분께

- ✔ 개인 의원을 법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한 원장
- ✔ 의료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병·의원 개설자
- ✔ 개원 공사 부가세와 과세·면세 겸영이 걱정되는 분
- ✔ MSO나 봉직의 계약의 세무 위험을 점검하려는 분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현황 진단	개설 주체, 최근 수입금액, 비급여 중 과세 항목 비중을 확인합니다. 봉직의 계약서와 MSO 용역계약이 있으면 함께 받아 소득 구분과 대가 산정 방식을 봅니다. 공동개원 구조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2 구조 비교	개인 유지, 의료법인 설립, MSO 병행을 비교합니다. 의료법인은 이월과세가 배제되므로 양도하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하고, 법인세 부담과 설립 허가 일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3 실행 지원	부가가치세 안분 계산,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 가맹, 성실신고확인 일정, 봉직의 원천징수 정리를 일정표에 맞춰 진행합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는 세무 자문 범위 밖이어서 별도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4 사후 점검	신고 후 매입세액 안분 정산, 특수관계 거래 대가의 적정성, 봉직의 지급 내역을 매년 점검합니다. 의료법 개정이 공포되면 개설 요건이 달라지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02

개설 주체별 세금 구조

개인 의원은 의료법인으로 옮길 때 이월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의원은 의사와 의료법인 등 의료법 §33②가 정한 자만 개설합니다. 일반 주식회사로 바꾸는 방식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의원을 열려면 설립 허가(§33⑨, §48①)를 받고 개설 신고(§33③)를 합니다. 일반 사업장의 법인전환과 달리 조특법 §32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하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이전 시점에 계산해야 합니다.

도해 1. 개인 의원의 의료법인 전환 흐름

개인 의원
의사 개설, 자산·부채 보유

→

의료법인 설립
시·도지사 허가(의료법 §48①)

→

포괄 양도
출연으로 세운 법인에 이전

→

양도소득세
조특법 §32 이월과세 배제

→

법인세 신고
수익사업 소득에 과세

출연으로 세운 의료법인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조특법 §32①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에 넘길 때 이월과세를 허용합니다. 사업양수도는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 양도하는 것입니다(영 §29②·⑤). 대법원은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세우고 부동산 등을 포괄 양도한 사안에서 출연은 출자와 다르다며 이월과세를 부정했습니다(2012두11607). 국세청도 같은 결론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591).

근거: 근거: 조특법 §32①·②, 조특법 시행령 §29②·⑤, 의료법 §33②·③·⑨, §48①, 법인세법 §4③, 대법원 2012두11607(2012.9.27), 부동산거래관리과-0591(2011.7.13)

도해 2. 운영 방식별 세금과 쟁점

방식에 따라 과세 주체와 위험이 달라집니다

운영 방식	세금과 요건	쟁점
개인 의원 유지	사업소득으로 개설자에게 과세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이고,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영 §133①3호)	소득 전부가 개설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입니다
의료법인 설립	진료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라 법인세를 냅니다(법인세법 §4③, 영 §3①). 설립 허가가 필요합니다(의료법 §48①)	이월과세가 안 됩니다. 설립 후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의료법 §51 2호)
MSO 병행	의원은 개인으로 유지하고 비진료 업무 용역의 대가를 MSO에 지급합니다	MSO가 개설 주체 지위를 사실상 가지면 의료법 §33② 위반이 쟁점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대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입니다(소득세법 §41)
일반 주식회사 개설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방식이 없습니다(의료법 §33②)	운영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87). 비의료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한 병원은 면세 배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19-서-3421)

기준일 2026-11-02 현행 조문입니다. 전환 시 취득세·부가가치세, 의료법인의 이익 처분과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은 견적 단계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의료법 개정은 실행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개설 주체는 형사 위험으로, 나머지 5개 항목은 세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1 개설 주체 적격

의원은 §33②1~5호에 해당하는 자만 개설할 수 있고,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87). 의료인(§33②1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33⑧, §87의2②2호). 다만 2 이상 면허 소지자의 의원급 동일 장소 개설은 예외입니다. 세금도 따로 생깁니다. 비의료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한 병원의 진료는 면세가 아니라고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33②·⑧, §87, §87의2②2호, 조심-2019-서-3421(2020.7.30)

2 이월과세 배제

의료법인은 개설자가 재산을 출연해 세우므로 출자가 아니라 출연입니다. 대법원은 출연으로 의료법인을 세우고 부동산 등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한 사안에서 조특법 §32 이월과세를 부정했고, 세무공무원의 비공식 답변은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립 후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의료법 §48③).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본세에 가산세가 붙고, 이 사안에서도 가산세 면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607(2012.9.27), 감사원-2010-감심-94, 부동산거래관리과-0591, 조특법 §32①, 영 §29②, 의료법 §48③

3 과세·면세 구분

치료 목적 진료는 면세이고(부가가치세법 §26①5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모발이식술 등(영 §35 1호 가·나목)은 과세됩니다. 다만 가목 괄호가 정한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 종양 제거 재건수술은 과세 제외 대상이어서 면세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39①7호),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40, 영 §81①). 감가상각자산은 이후 비율이 5퍼센트 이상 달라지면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41).

근거: 부가가치세법 §26①5호, §39①7호, §40, §41, 영 §35 1호, 영 §81①

4 장부·신고 의무

의료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 단서가 §147의2 사업자를 제외하므로 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 미만이어도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개원은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서 개원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6개월 안(6월 30일까지)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그 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147의2·§133①3호, 소득세법 §160의5③·§70의2②·§81의3①

5 봉직의 인건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20①1호, §127①4호). 세후 금액을 보장한 네트 계약에서 대납한 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심판례가 있으나(조심 2023부0671), 과세관청은 기본통칙상 불산입 입장이라 다툼이 남습니다. 이 사안은 수정신고와 원천징수를 마친 경우입니다. 근로 제공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20①1호·§127①4호, 조심2023부0671(2024.2.28), 조심-2022-서-5855

6 MSO와 특수관계 거래

MSO는 구매·인사·마케팅·전산 같은 비진료 업무만 맡는 구조여야 합니다. MSO가 개설 주체의 지위를 사실상 가지면 의료법 §33② 위반이 쟁점이 되며, 이 판단은 별도 전문가가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무에서는 의사와 MSO가 특수관계인이면 용역 대가의 적정성을 소득세법 §41로 따집니다. 필요한 자료는 용역 제공 사실, 대가 산정 근거, 지급 증빙 3가지이고, 없으면 필요경비 부인과 소득금액 재계산으로 이어집니다. 병원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를 사업자로 본 1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67, 치과 명의대여 사안). 계약서의 당사자와 운영 실질이 다르면 과세 대상자도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법 §33②, 소득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67(2017.1.12, 1심), 조심-2020-부-1597



04

판정 순서와 일정

개설 주체 확인이 먼저이고 세금 계산은 그다음입니다

도해 3. 개원부터 신고까지 기한

개원 준비
면세 진료분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39①7호). 과세 진료분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을 신청해야 등록 전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39①8호).

사업 개시일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합니다. 의료업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해당합니다(소득세법 §162의3①, 시행령 §210의3①2호·ⓜ).

사업용계좌 신고
개원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160의5③).

다음 해 5~6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확인서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70의2②).

의료법인 전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소득세법 §105①1호). 설립 후 2년 내 미개설은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의료법 §51 2호).

도해 4. 판정 순서

순서와 질문	결과와 근거
1 개설 주체가 §33②1~5호에 해당하는가	아니오이면 개설할 수 없고 벌칙이 적용됩니다(§87). 예이면 2로 갑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33⑧, §87의2②2호). 다만 2 이상 면허 소지자의 의원급 동일 장소 개설은 예외입니다.
2 개인 의원을 의료법인으로 옮기는가	예이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므로 양도하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하고 실행 여부를 정합니다(대법원 2012두11607).
3 과세 진료가 섞여 있는가	영 §35 1호 가·나목의 성형·피부 미용 항목은 과세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부가가치세법 §40, 영 §81①).
4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가	예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①3호, 소득세법 §70의2②).
5 봉직의 급여나 MSO 대가가 있는가	봉직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127①4호). MSO 용역 대가는 적정성을 검토합니다(§41).

보수

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개설 주체와 전환 방식, 과세·면세 비중, 봉직의 계약 현황을 확인한 뒤 업무 범위와 일정에 맞춰 견적서를 드립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개인 의원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일반 주식회사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닙니다. 의료법 §33②는 개설 주체를 의사 등 면허 소지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위반해 개설·운영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87). 법인 형태를 쓰려면 의료법인 설립 허가(§33⑨, §48①)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지원 법인(MSO)은 비진료 업무 용역만 맡을 수 있고, 의료법 위반 여부는 별도 전문가가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법 §33②·⑨, §48①, §87

Q2. 의료법인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조특법 §32①은 현물출자나 시행령 §29②의 사업양수도 방식을 요구합니다. 사업을 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 양도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은 재산을 출연해 세우므로 대법원 2012두11607과 부동산거래관리과-0591에서 이월과세가 부정됐습니다. 설립 후 재산 처분은 시·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의료법 §48③). 양도하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의료법인 설립 허가, 법인세 부담을 함께 비교합니다.

조특법 §32①, 영 §29②·⑤, 대법원 2012두11607, 부동산거래관리과-0591, 의료법 §48③

Q3. 봉직의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됩니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수당은 근로소득이고(소득세법 §20①1호),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127①4호).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하므로 당사자별로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정리합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지급해 온 경우에는 지급 누적액과 정리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세후 금액을 보장한 네트 계약의 대납 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심판례가 있으나 과세관청 입장은 다릅니다(조심2023부0671).

소득세법 §20①1호, §127①4호, 조심2023부0671

담당 회계사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대기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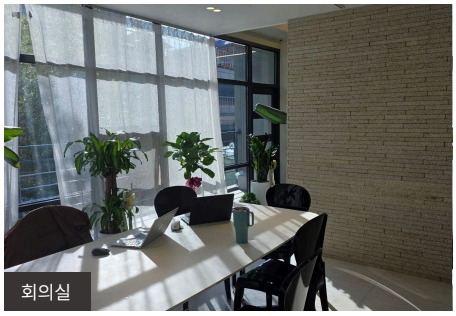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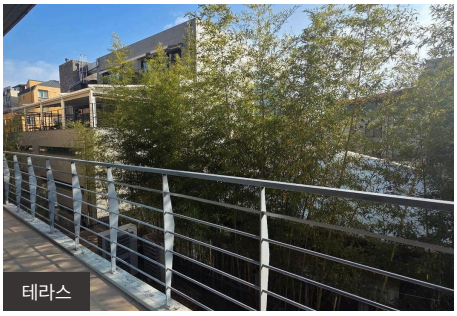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